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2년 8 월 3 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

1. 제안이유

「지방공기업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우리구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공단의 효율적 운영·관리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단의 비상임 이사(국장) 수 변경(2명→1명) (안 제9조)
- 나.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 정비 (안 제12조)
- 다. 임원추천위원회 회의 개의(開議) 기준 정비 (안 제24조)
- 라.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(안 제8조, 안 제25조)

마. 공단의 사업내용 정비 (안 제27조)

바. 법제처의 '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른 정비 (안 제9조, 안 제22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 (참조: 기획예산과, 주소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, 3층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[전화: (02)330-1096, FAX: (02) 330-1442, E-mail: sij2337@sdm.go.kr]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·반대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대문구 홈페이지(<http://www.sdm.go.kr>) 메인 화면 상단(전체메뉴-구청소식-공고-입법예고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

○ 성 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제정 내용	의 견 (찬성·반대 여부 및 그 사유)	비 고